#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7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박수민·최은석·송언석

박대출 · 최수진 · 서명옥

박준태 • 이인선 • 이종욱

박충권 • 정동만 • 김석기

강민국 · 강선영 · 박성민

김용태 · 김장겸 · 윤영석

나경원 · 최보윤 · 김위상

배현진 • 이종배 • 신동욱

이헌승 · 정희용 · 김종양

임종득 • 고동진 • 한기호

조배숙 • 박상웅 • 김승수

조승환 · 강승규 · 유상범

조정훈 • 서천호 • 박덕흠

엄태영 · 김선교 · 박정훈

곽규택 • 강명구 • 김미애

윤한홍 · 김도읍 · 구자근

우재준 · 김민전 · 서범수

박수영 · 김소희 · 배준영

김 건 · 강대식 · 이만희

윤상현 • 정성국 • 최형두

주진우 • 백종헌 • 이성권

##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 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 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1호).
-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 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직선거"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말한다.
- 2. "투·개표 시스템"이란 공직선거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
- 3. "특별점검"이란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하여 오류와 흠 결을 점검·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특별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 등

#### 제1절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조사를 위한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이하 "특별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 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 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 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
    - 마. 그 밖에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
  - 2. 제1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에 대한 조치
  - 3. 특별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특별점검위원회의 독립성)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6조(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외 교섭단체가 지명하여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 3.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특별점검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

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최초로 제23조에 따른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점검 완료 후 제3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 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특별점검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2. 그 밖에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4.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특별점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사의 공개) ① 특별점검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점검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

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사무처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특별 점검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워으로 본다.
- 제19조(징계위원회) ①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

- 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 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특별점검

- 제21조(특별점검) 특별점검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공직선거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행한다.
- 제22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특별점검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상·방법(기술적 수단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의견제출의 절차와 방법.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

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특별점검의 개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특별점검 개시 결정을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4조(특별점검의 방법)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 1.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관련 문서 열람
  - 2.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록 등의 확인
  - 3.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 술 청취
  - 4.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특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 5. 관계 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6.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 견 청취
  - 7. 특별점검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 8. 그 밖에 특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 ②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 리위원회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5조(동행명령)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 중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 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 ·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 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

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6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특별점 검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 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특별점검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절 청문회

- 제27조(청문회의 실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 기로 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국가 등의 지원) 특별점검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제29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 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0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1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

- 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 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33조(검증)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점검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 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 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특별점검위원회 활동 등

- 제34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 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특별점검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특별점검위원회에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 ③ 특별점검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④ 특별점검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특별점검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7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나 그 밖의 장 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3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1.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 2.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3. 기타 특별점검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 4.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 5.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에 관한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
- 6.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 지원에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 관 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 ⑥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 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특별점검위원회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3장 보칙

- 제40조(비밀준수 의무)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특별점검위원회등의 권

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장 벌칙

- 제43조(벌칙) ①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 4.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 5.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2. 제41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특 별점검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 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br/>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 2.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